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오육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1
----------	-------

발의연월일 : 2023. 2.

발 의 자 : 오육자,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백남환, 신종갑, 이상원,
장정희, 차해영,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1. 제안이유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나. 접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2조, 안 제3조)
- 다. 예방접종 위탁 및 지원절차 (안 제4조, 안 제5조)
- 라. 환수조치,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준용 (안 제6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불입
- 다. 입법예고: 2023. 2. 1. ~ 2023. 2. 5.
- 라. 조례안: 불입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지원내용) 접종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4조(예방접종 위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만 65세 이상 마포구민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1인별 지원 비용: 120,000원(백신비 + 시행비*)

*2022년도 백신비: 89,000원, 2023년도 시행비: 19,610원

- 접종대상

연도	대상자 구분	전체 대상자	접종 예상인원 (50%)	비고
1차년도(2024)	만 75세 이상	1,893	890	첫해 대상자 75세 이상 (연령별 취약 구분)
2차년도(2025)	만 65세 이상	2,000	1,000	만65세 이상 중 75세 이상 제외 산정
3차년도(2026)	만65세 도래자* + 만 66세 이상 미접종자(300명 추정)		500	* 22년 만65세 도래: 207명 23년 만65세 도래: 212명
4차년도(2027)			500	
5차년도(2028)			5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소계(a)						
세출	○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비용	106,800	120,000	60,000	60,000	60,000	406,800
	소계(b)	106,800	120,000	60,000	60,000	60,000	406,800
□ 총 비용(a-b)		106,800	120,000	60,000	60,000	60,000	406,8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타(구비)		106,800	120,000	60,000	60,000	60,000	406,800
합계		106,800	120,000	60,000	60,000	60,000	406,800

5. 덧붙이는 의견: 1인별 지원 비용은 백신비 및 시행비의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건강동행과 김화진
연락처	02-3153-9995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 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 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 3)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 4)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5)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 6)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나. 가목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